

『인권연구』 7(2): 1-43.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7(2): 1-43.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4.7.2.1>

[일반논문]

##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권’의 위치

:1970-80년대의 ‘저항’과 ‘생존’의 언어\*

이 정 은\*\*

한글초록

이 글은 한국의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권개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의미를 획득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에 관한 기존 논의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사료와 단체의 성명서,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한 구술자료를 검토하였다. 이 시기의 인권운동은 종교단체와 법조인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인권의 내용은 고문치사, 구속자 석방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문제삼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에서 더 나아가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초기 노동운동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인권유린으로 진단하며 수탈적 자본주의와 특권경제, 억압정치를 비판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선교사와 해외인권운동의 지원으로 한국의 인권현실을 해외에 알릴 수 있었다. 이 글은 권위주의 정부가 독점했던 반공과 조국근대화라는 인권개념을 1970~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저항과 생존의 언어로 새롭게 국민들이 전유하며 획득해온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앰네스티 한국지부, 월요모임, 인권선언

\* 이 논문은 2023-2024년도 국립창원대학교 자율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 국립창원대학교 사회학과

ISSN 2635-4632

— 목 차 —

- I. 문제제기
- II.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정의
- III. 인권운동의 주체
- IV. 인권운동과 민중운동과의 관계
- V. 앰네스티 활동과 선교사의 지원
- VI. 맺으며

## I. 문제제기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인권은 국가폭력과 억압에 맞서 자유와 평등을 추구해온 중요한 가치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화운동은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국가에 저항하여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이룬, 한국현대사를 바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민주화운동기에 근대적인 의미의 ‘인간 개인의 권리보장’을 주장한 것은 아니었고 인권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양심수가족 활동도 당시에는 ‘운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대의 활동이 인권운동인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 그 내용분석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더욱 풍부히 하는 것이리라. 따라서 현재적 관점에서 ‘인권운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과 사회민주화 과정에서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 ‘인권’은 1950-60년대에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먼저 제도로 도입된 후, 정부가 독점한 인권의 내용을 국민들이 새롭게 전유(專有)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이정은, 2008). 그 시기가 바로 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70-80년대였고 전국민적인

저항을 통해 인권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사에서 인권운동은 197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CCKC)의 인권위원회 형태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민중들의 요구가 분출된 시기도 이때이다.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기 인권운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한국민주화운동사2·3(2009, 2010)』에 개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1970년대 유신체제기에서부터 1992년 문민정부 수립까지의 인권운동의 특징을 종교계의 활동과 고문, 의문사, 조작사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이 발간된 이후, 인권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심화·확장되었다. 하나는 종교계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사적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의 사회운동과 협력한 인권운동에 관한 연구이다. 종교계의 인권운동은 유신체제에서 진행된 한국기독교 활동을 세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분석한 손승호(2015, 2017, 2020)의 연구와 박정희 정권기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재조명한 연구(정병준, 2022), 197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교회의 사회참여 패러다임을 분석한 연구(김명배, 2017, 2020) 등이 있다. 특히, 김명배(2015)는 1970년대 이후, 한국기독교의 사회운동 인식을 ‘민주화와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해외민주화 운동과의 협력에 관해서는 재일대한기독교교회(KCCJ)의 재일조선인과 마이너리티에 대한 사회운동연구(정계향, 2021), 국제 엠네스티 운동과 1970년대 한국의 초국적 민주화운동 과정 연구(황인구, 2023) 등이 있다. 김대중 구명운동과 관련하여 1980년 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활동을 분석하거나(고지수, 2020) 한·독 에큐메니컬 협력관계에 관한 연구(한은석, 2021; 2024), 광주항쟁과 초국적 후원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최용주, 2020) 등이 있다.

그렇다면, 전문적인 인권운동이 등장하기 이전에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생존권을 위해 싸운 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접합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화운동에서 인권 관련 쟁점은 무엇이었고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내용으로 발현되었을까? 이

를 위해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1970년-80년대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와 각종 성명서를 분석하였고 사료에 담기지 못한 역사적 사실의 전후 맥락과 의미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수집한 구술자료를 참고하였다.<sup>1)</sup> 이 글은 1970년-8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논의된 인권의 내용을 파악하여 인권개념이 사회민주화 운동과 함께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하고자 하는 목적 또한 크다.

## II.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정의

### 1. 민주화운동의 정의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정의와 학술적인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보상법, 법률 제6123호, 2000.1.12. 제정)”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있다. 민주화보상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을 “1964년 3월 24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된 2000년에는 1969년 8월 7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3선 금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 시작된 시점을 민주화운동의 출발로 삼았다. 그러나 2007년의 개정으로(법률 제8273호, 2007.1.26.) 민주화운동 인정 시기를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시작된 1964년 3월 24일

---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에는 구술컬렉션이 구성되어 있으며 시기와 분야에 따라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구술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일부만 오픈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자료를 신청하여 직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가서 열람할 수 있다.

이후로 확대하여 ‘6·3세대’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하였다.<sup>2)</sup>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을 각각 나열하며 국민의 권리신장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인천5·3민주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다.

2001년에 이 법률이 제정될 때(법률 제6495호, 2001.7.24.)와 비교하여 1차 개정(법률 제10007호, 2010.2.4.)에서 2·28대구 민주화운동을,<sup>3)</sup> 4차개정(법률 제11781호, 2013.5.22.)에서 3·8대전 민주의거를<sup>4)</sup> 그리고 7차 개정(법률 제19627호, 2023. 8. 16.)에서 인천5·3 민주항쟁을 추가하였다.<sup>5)</sup> 이 두 법률은 완결된 상태의 민주화란 존재할 수 없고 사회 모든 분야의 민주주의는 불균등하게 발전하므로 민주화운동이 끝나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정립이 가능할 것이다(이영재, 2021). 따라서 민주화운동은 일회적인

- 
- 2)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연혁 참조. 여기에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이라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 3)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운동 기도에 대항하여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투쟁한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대표적 저항운동인 2·28대구민주화운동을 이 법의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 4) “3·8대전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3·8대전민주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임”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 5) 인천5·3 민주항쟁에는 개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개정은 7차에 걸쳐 이뤄졌지만, 위에서 설명한 내용이 3번의 개정을 통해 이뤄졌고 나머지는 타법률 개정에 의한 것이다.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성취되고 확장되어 왔으며, 앞으로 사회의 조건에 따라 변화 가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6)</sup>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특정 시기보다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을 포괄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한다.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자율을 확대시키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운동, 냉전체제·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나 통일운동, 민중의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은 어느 것이나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15).

또한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기본연구에서 민주화운동이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이탈하여 권위주의로 향하고 있는 비민주주의적, 권위주의적 통치 질서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기본연구, 2020; 88).

이렇게 볼 때, 민주화운동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방식과 운동의 범위, 내용에 따라 구분한 민주화운동사업회의 정의는 설득력 있다. 첫째는 민주화운동의 내용과 범위를 헌법과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헌정 질서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한 저항활동을 말한다. 둘째로는 형식적인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형식과 절차,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활동이다. 셋째, 민주주의를 모든 억압·착취·차별·배제에 반대하는 사회나 상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치·경제·사회는 물론, 일상과 문화에 존재하는 모든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연구소, 2006;11).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정치 권력의 성격에 따라 위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의 형

---

6) 민주화운동의 정의와 논쟁에 대해서는 이영제(2021) pp.246-249 참조.

식과 절차를 바로잡고자 한 활동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의 사회적 모순을 바로잡고자 한 운동과 그 성격이 다르다. 인권운동이 부문운동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2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sup>7)</sup>

## 2. 인권운동의 정의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법률 제6481호, 2001. 5. 24.)에서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이라는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sup>8)</sup>

그렇다면, 2001년에 인권이 법률로써 정의되기 전, 인권과 인권운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날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며 인권상담을 시작하였다(이정은, 2010). 1953년부터 상설화된 인권상담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인권상담과 법률상담을 구분하였다. 인권상담은 “형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더욱 경찰에서도 인지할 수 없는 순수한 ‘인권’만의 침해”를 취급한다고 하였는데,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인권상담으로 처리하였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의처증으로 아내를 구타한다거나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구박받는 할머니의 사례처럼, 법률로 인지하기 어려워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을 인권문제로 보았다. 그

7) 이 시기 인권운동에 대해서는 정정훈(2023) 참조.

8)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무엇인지를 규정한 제2조의 3항으로 차별행위를 모두 서술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래서 서울지방검찰청에 인권상담소를 설치한 1953년부터 5년간 인권상담은 불과 14건에 불과한 반면, 법률상담은 6백여 건에 달하였다. 법률상담은 금전채무관계, 이혼문제 등의 법률 위반사례로 범인을 잡거나 입건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었다.<sup>9)</sup>

1950-60년대에 정부가 독점한 반공과 경제발전으로서의 인권개념은 민주화 운동기에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정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 따른 노동문제를 제기하며 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 2권에서 인권운동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저항’으로 2가지 문제에 주목한다. 첫째는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 피해자들이 신체의 자유를 주장하고 폭력·감금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자와 빈민의 생존권 투쟁과 인간다운 삶을 주장하는 것이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사 3권에서 인권운동은 ‘인권’의 가치를 표방했던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과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신체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했던 권위적인 국가에 대항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으로 보았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현대사회에서 인권문제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국가, 사회집단,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사회관계에서의 억압과 왜곡된 가치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1970-80년대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출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논의를 기반으로 이 시기의 인권운동은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과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의 폐해를 비판하며 등장한 노동자, 빈민 등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권운동의 주체는 누구였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

9) 『조선일보』 1957.2.6. 「법의 보호를 요청. 인권상담소에 5년간 6백 여 건」.

### III. 인권운동의 주체

#### 1. 종교 및 사회단체, 법조인

인권운동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의 저항을 통한 권리획득 운동이라고 할 때, 운동의 주체가 당사자인지 그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활동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소수자에 관한 관심은 인권 회복을 위한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들 스스로가 인권운동의 주체로 등장하는 현상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sup>10)</sup> 그렇다면 한국에서 종교단체의 운동은 민주화 운동기에 당사자 운동이었는가 아니면 지지와 연대활동을 한 것인가? 그들이 인권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운동의 단초가 된 것은 1973년 4월 22일, 남산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산야외음악당에서 부활절 예배가 열리던 날, 박형규 목사는 민주주의의 부활과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현수막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국가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중요한 후속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이 사건 한 달 후인 5월 20일에 한국 개신교 민주화운동을 선포한 “1973년 한국 그리스도인 선언”과 11월 24일에는 ‘신앙과 인권’협의회 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sup>11)</sup> 둘째, 이 사건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KK) 인권위원회가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

10) 소수자 연구가 ‘소수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연구와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소수자에 속하는 집단이나 대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과 유사하다. 정근식(2013) 참조.

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연구위원회는 1973년 10월 15일 인권문제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87) pp.295-299 참조.

며 셋째, 이 사건 이후, 한국 개신교 민주화운동과의 국제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이 같은 종교단체의 저항이 1970년대에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미 1960년대에도 종교단체들은 박정희의 민정이양에 관한 의사 번복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하였고,<sup>13)</sup> 1964년에 한일국교 정상회담이 진행되자 회담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적극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전까지 기독교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구조를 문제삼기보다 ‘정신적’ 근대화를 논하는 다분히 관념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경제적 평등’이나 ‘자유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얘기했지만, 정치·사회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이것은 단지 한국기독교만의 특징이 아니라, 1960년대 세계기독교 자체가 경제성장과 빈곤 극복을 위한 ‘발전’만을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NCCK 인권위원회, 1987: 49-50).

교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치에 참여하며 행동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전태일 분신 이후에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 정부로서도 1970년대는 유신독재 시절이었지만 공산정권에 순교로 신앙을 지켜온 목사들을 빨갱이로 몰기란 쉽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에서 한국을 돕는 후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기독교와 가톨릭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는 유일한 세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다.<sup>14)</sup>

---

12) 한국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남산 부활절연합예배 사건” 참조.

13) “권력의 집중은 권력에의 유혹을 더욱 자극하는 것이므로 그 연장은 자유민주주의의 준비라기보다도 집중된 권력에의 쟁탈력을 더 많이 조장하여 그 동질의 전통이 계속 순환할 우려가 더 많다는 것이 또한 드러난 사실이옵고 (중략) 일반정치는 조속히 정치인에게 맡기고 군은 국방의 간성으로 그 본무에 헌념할 수 있기를 국민과 함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1963년 3월 26일 한국기독교연합회 공개서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1987) 참조.

14) 민주화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인권운동과 빈민선교로 민주화운동 이끌어간 박형규 목사” 참조.

남산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이후 NCC 연구위원회는 1973년 10월 15일에 인권문제협의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권선언문’이나 ‘인권기도회’ 같은 형식으로 정부의 ‘반공으로서의 인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11월 23, 24 양일에는 ‘신앙과 인권’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고 강연내용을 토대로 ‘신앙과 인권’협의회 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1973년 세계인권선언일 이후 일주일을 교회와 인권 기도주간으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도회를 열었고 이 행사는 그 이후 인권위원회를 통해 매년 전 교회에서 진행되었다.<sup>15)</sup>

또한 도시산업선교회는 1973년 12월 3일에 한·미·일 3국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의 부당노동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고, 둘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며, 셋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법 철폐, 넷째,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6:219). 도시산업선교회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권의 핵심으로 제시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였다.

교회는 민청학련사건 이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에 저항하였다. 긴급조치 4호가 발효된 1974년 4월 3일에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은 유신철폐를 위해 반독재 시위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박정희는 그날 밤 특별 담화를 통해 “반정부 운동은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투쟁의 일환이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에 가입하였거나 이를 찬양하는 사람은 물론, 활동에 관한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어도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 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발표하여 엄혹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sup>16)</sup>

15) ‘신앙과 인권’ 협의회 인권선언은 학원에 있어서의 인권, 여성의 인권, 노동자의 인권, 언론인의 인권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NCCCK인권위원회(1987), pp.298-299 참조.

국가전복을 기획했다는 1차 인혁당 사건은 담당 검사들이 증거불충분으로 공소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사건 관련자가 징역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으나<sup>17)</sup> 2차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 그리고 징역 15~20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특히 사형선고가 난 다음 날 새벽,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8명 전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어 버렸다. 이 일로 인해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운동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운동이 연대하고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회장 등을 선임하고 인권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돈명 변호사는 1970년대말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였다.

70...한 5,6년 7년 78년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무렵이에요. 78년 그 무렵인데, 개신교 쪽이 말하자면 인권위원회 쪽이 훨씬 사건부탁이 많아요. 수가 많으니까 그리고 가톨릭 쪽에도 오는 것이 그것이 정의평화위원회 쪽으로 많이 온단 말이야. 의뢰가 그래서 내가 그걸 특별히 같이 합류해 가지고 하나씩 이견우 변호사하고 의논을 했어요. (중략) 그래서

- 16) 박정희 정권하에서 반정부 조직인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은 2가지가 있었다.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하던 학생들의 배후에 복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는 것이었고 2차 인혁당 사건은 1974년에 민청학련이 인혁당의 조종을 받아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1차를 인혁당 사건, 2차를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부른다.
- 17) 중앙정보부는 도예중, 양춘우 등 언론인과 학생 41명을 복한 노동당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을 결성하여 국가전복을 기획했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피고인들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만 할 뿐, 체제를 전복하고자 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중앙정보부의 무리한 사건 조작으로 수사 검사들이 기소를 거부하고 사표까지 제출하는 사태를 불러일으키면서 최종적으로 기소인원 13명 중에 도예중, 양춘우, 박현채 등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외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정은(2008) 참조.

인권위원회로 오는 사건, 정의평화위원회로 오는 사건, 그밖에 이제 개별적으로 의뢰하는 사건 이것을 전부 합쳐 가지고 내가 주로(일종의 총무와 같은) 응. 그런 역할을 한거라구. (중략) 사건은 폭주하고 변호사는 없고(이돈명, 2002)

1974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고 ‘우리의 인권 주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인권회복이 안보와 사회안정을 해친다는 유신정권을 비판하며 “인권회복을 요구하는 것이 용기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현실을 개탄하며 당대의 인권현실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전략) 인권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한국적 현실을 외면하고 서구적 민주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철없는 소리이다.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에 따라 인권의 차별대우를 받는다. 국민소득 1,000달러, 수출 100억 달러가 달성될 때까지 국민의 기본권은 유보되어야 한다. (중략) 일하는 사람은 유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없으며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정,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고 각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계인권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하여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의 안정과 정권안보에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발상자체가 사대주의적이기 때문이다. (강조: 인용자)

1950년대에 이승만 정권은 유엔에서 승인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인권선언을 홍보하였다면, 박정희 정권도 1960

년 4.19혁명기에 인민들의 저항을 묵도한 후 어떤 식으로든 인권의 가치를 제도화해야만 했다. 그러나 유신체제 이후 박정희 정권은 정부가 독점한 인권 이외의 인권은 “서구 민주주의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금지하였다. 정부의 인권 담론을 비판하고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저항으로서의 인권’이 등장하는 지점이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국민 각자의 인권보장은 민주회복의 시작이며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라며 다음과 같은 여섯 항목을 요구하였다.<sup>18)</sup>

1. 부정과 부패는 국민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sup>19)</sup>
2.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고문치사되었다. 많은 사람의 증인과 해외언론의 보도가 이를 밀받침하고 있다.<sup>20)</sup>
3. 정부는 마땅히 구속인사 203명 전원을 조속히 석방함으로써 인권을 유린한 죄과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4. 구호자의 인권은 어느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sup>21)</sup>

---

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 평화위원회(1974.2.10.)의 “인권회복을 위한 기도회” 성명서. 각 항목에 대한 보조 설명은 이하의 각주에 서술하였다.

19) “부정과 부패는 권력과 금력의 강약에 따라 인권이 차별적으로 대우됨을 의미한다. 부정과 부패는 국민총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암적 존재이며 동시에 동등한 발양을 가로막는 사회적 악조건이다. 부정과 부패의 일소가 곧 정부의 약화를 결과하는 것일지라도 국민은 부정·부패의 일소를 강력히 촉구한다.”

20)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최종길 교수 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다. 인권유린의 수부 중앙정보부 등은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며, 인권유린을 인정하는 모든 법적, 제도적 장치는 철폐되어야 한다.”

21) “근로자가 자기 이익의 옹호를 위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봉쇄하는데 따른 모든 책임은 마땅히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그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정, 상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는 불리한 노동조건과 실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새로이 고통받는 사람들, 민주회복과 구속인사 석방을 부르짖는 학생, 교수, 변호사, 성직자들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6. 국민 각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니다.

여기에서 ‘인권주장’의 내용은 부패일소와 고문치사, 민청학련 사건으로 인한 구속인사 203명 석방, 근로자 노동권 보장, 학생·교수·변호사·성직자들에 대한 박해중지이다. 그러면서“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대화와 토론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혁당 사건을 조작이라고 한 조지 오글 목사(George E. Ogle, 한국명 오명걸)는 결국 같은 해 12월 14일 강제 추방되었다.<sup>22)</sup> 그는 회고 인터뷰에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특히 인혁당 사건 8인을 위하여 기도를 했으며 그들을 위한 탄원운동을 한 것이다. 남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던 것에 대해 설교를 했을 뿐 인혁당을 위한 설교가 아니었다. 인권에 관한 글을 출판한 적도 없고 구체적인 활동들이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쁜 감정을 가졌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왜 공산주의를 위해 일하느냐? 라고 질문했다(조지 E 오글, 2002).<sup>23)</sup>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출범 이후부터 한국 인

---

22) 조지 오글牧사는 인천도시산업선교회의 조직을 주도하였고 목요기도회에서 인혁당 고문조작 폭로로 강제로 추방되었다. 북미한국인권연합 고문을 역임했다.

2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컬렉션, 해외민주인사, 미주, 조지E.오글(George E. Ogle).

권운동의 메카였다.<sup>24)</sup> NCKK 인권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74년 12월 15일, ‘74년 인권선언문’을 발표하였다.<sup>25)</sup> 미국 대통령 방한 전후를 기해, 정부는 완화정책과 경화정책을 편다고 비판한 후, 인권유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먼저, 유신체제 유지를 위해 한국부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사회단체를 정치적으로 동원한다고 비판하며 신도들과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를 호소하는 행진”은 무장경찰의 곤봉과 최루탄으로 막는 데에 반해, 이들의 집회는 허용한다는 것, 둘째, 야당 없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사당에서 유린된 인권”이고 셋째, 교수에 대한 권고사직, 파면 징계와 오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와 신부들의 추방은 “선교의 자유 침해이며 종교박해”라는 것이다. 유신체제의 인권유린은 안보와 경제성장, 정치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정치 회복, 구속인사 석방과 불법행위 철회, 그리고 사회단체를 어용화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sup>26)</sup>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정권의 폭력이 계속되자, 한국기독교 전국 청년연합회협의회도 1975년 3.1절을 맞아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한국사는 인권에 대한 민중의 자각이 반영된 역사”이고 권력악을 제거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인권운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바야흐로 인류는 권력악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전쟁과 계급투쟁과 온갖 인위적 재난이 닥아옴을 깨달았다. 앞으로의 새 인류사는 인권의 제1공적인 이 권력악을 제거하는 인류적 행

24) 이해동(1994), 「목요기도회는 ‘제3의 교회」,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 pp.26-31.

25) KNCC 인권위원회 편(1994),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 pp.218-219.

26)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의 온상인 유신헌법을 철폐하고 민주정치를 회복하라. 2. 구속인사의 석방에 앞서 각종 징계, 파면, 권고사직 등 불법행위를 철회하라. 3. 임광규 변호사, 백낙성, 김병걸 두 교수, 오글목사 등에 대한 조치를 취소하라. 4. 각양 사회단체를 어용화하지 마라. 5. 구속인사 203명 전원을 무조건 석방하라.

위를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사는 특히 근대 이후사에서 바로 이 인권에 대한 민중의 자각이 반영된 역사이다. 새로운 한국사는 오늘의 인권운동을 초석으로 삼고 전개하여야 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할 책임이 우리 세대에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인권운동이요, 양심회복 운동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우리의 행동강령을 채택한다.

채택된 행동강령을 보면, 인권운동은 종교인으로서 “양심회복 운동이며 신앙고백 행위”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모든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주장한다. 박정희 유신체제기에 종교인들이 교리에 따라 기도와 선교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 이유가 드러난다.<sup>27)</sup>

결의문에서는 인권침해로 고문과 부정투표를 고발하며 고발자 구속의 공포 분위기와 경제과탄의 원인인 악덕 기업에 의한 생존 피해를 경고하고 있다. 또한 언론탄압과 지식인들의 정의구현운동에 대한 억압, 신앙·언론·학문·예술 활동의 자유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1970년대 중반부터 ‘인권’ 회복을 위한 종교계의 활동은 민주화운동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시에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동을 폈지만, 종교계의 요구가 독재정권 타도와 같은 정치투쟁으로 한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전체로서의 교회는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었고 진보적인 교회일지라도 ‘영적 양육’과 ‘사회운동’ 사이에는 균형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강인철, 2003).

NCKK 인권위원회는 활동 목적을 “선교의 자유를 수호하며 인권

27)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의 행동은 양심회복운동이요, 신앙고백 행위임을 명심하라. 2. 여기엔 승리자도 패배자도 원고도 피고도 없고 오로지 새역사에 대한 상속자와 죄인만이 스스로 구별될 것임을 자각하라. 3. 우리의 모든 행동은 정신적 물리적 폭력을 절대 배제한 한계 내에서 수난을 무릅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개한다.

유린을 방지 또는 제거”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지만, 1970년대에 기독교계의 인사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속되거나 용공 시비에 휘말릴 때는 ‘선교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진보적 개신교계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지목받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으며 NCKK는 용공시비에 대해 ‘총력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으로 ‘호명’되는 것은 사회적인 사형선고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로 지목된 개인은 ‘비국민’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싸우겠다는 NCKK 인권위원회는 기독교의 성격을 강조하여 선교의 자유를 정면에 내걸 수 밖에 없었다(손승호, 2017: 244-2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NCKK 인권위원회 등 종교단체들은 중심이 되어 기도회와 미사 형식으로 기본권 침해와 학생·민주인사에 대한 구속 문제 등을 제기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저항하며 인권의 의미를 만들어 갔다.

## 2. 피해자 가족중심운동

민주화 운동기에 인권운동을 담당한 또 다른 주체는 바로 구속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가족이 불법 감금되거나 고문으로 사건이 조작되는 현실을 보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정권에 의한 의문사와 고문, 조작사건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종교단체의 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점차 운동의 주체로 성장해갔다.

처음에는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도 대통령을 상대로 진정서를 내며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었고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은 간첩 가족으로 몰려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숨죽여 살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의 정치공세로 갈 곳 없는 구속자 가족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던 곳이 민청학련 사건 이후 조직된 NCKK 인권위원회였다.

1974년 7월, 구속자 가족 22명은 기독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민청학련 관련 구속자와 긴급조치 위반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고 이 모임은 목요일 오전 10시로 정례화되었다. 종교형식의 목요기도회는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위한 집합 장소가 되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구속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민청학련 관련 구속자’와 ‘인혁당 관련 구속자’ 가족들이 모여 구속자가족협의회(이하 구가협)를 조직하였다.<sup>28)</sup> 목요기도회는 처음에 젊은 성직자들과 구속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었으나 정부와의 첨예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NCKK의 공식적인 기도회로 성장하며 정권의 폭력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던 중 명동성당에서 1976년 미사형식으로 발표한 ‘3·1 민주국선언’ 사건으로 구속자 가족들이 구가협에 참여하면서 1976년 10월에는 ‘한국양심범가족협의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양심수’라는 용어는 1980년대에 널리 쓰인 말로 구속자들이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편한 용어였다. 구속자에서 양심범, 양심범에서 양심수로 용어를 바꾸면서 구속자 가족운동도 변화를 경험하였다. ‘죄를 짓고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라는 뜻이 있어서 가족들 스스로가 위축되기도 했지만, 양심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상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이들의 가족들’이라는 의미가 강하여 민주화운동 내에서도 더욱 조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김철이·이경은, 2007: 133, 179-180).<sup>29)</sup> 당

28) 1974년 9월, 공덕귀를 회장으로 하고 김한림을 총무로 한 NCKK 인권위 내에 구속된 가족들이 모여 구속자가족협의회(이하 구가협)를 조직하였다. 구가협은 유신헌법 철폐와 중앙정보부 해체, 학원자유화 등을 요구하였다. 김철이·이경은(2007) 참조.

29) 당시에는 양심범가족협의회, 양심수가족협의회, 양심범 가족들의 모임 등의 명칭이 두루 사용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명칭을 바꾼 것이라기보다 가족운동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었다. 그 전에도 ‘양심범’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단체의 명칭을 한국양심범가족협의회로 규정하면서 정치범, 사상범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확산범에 대해 양심범이라는 개념을 조직적으로 정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에 제정구 의원과 같이 빈민운동에 참여하다가 그의 옥바라지를 하였던 신명자는 이렇게 회고했다.

지금 생각하는 옥바라지하고는, 다 그 당시에 들어가면 다 빨갱이이고, 집안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집에서 안 와요. 아무도. 오는 사람은 일부고 나머지는 집에서 오지도 않고 내놓은 자식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일부 엄마들만 와서 옥바라지를 하고, 누나나 동생이나 이런 정도 했고, 붙잡혀 가신 분들 중에서 안 오는 분들이 거의 한 오분의 사는 되고 온 사람들은 오분의 일이나 될까? 오분의 일도 제가 많이 잡은 거라고 보구요(신명자, 2011).<sup>30)</sup>

피해자 가족들이 주목한 것은 조작사건에 의한 고문이었다. 심각한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들을 보며 가족들이 나서서 고문과 조작사건의 진상을 알리고자 하였다. 그 후, 구가협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로 계승되었다. 1985년은 서울 미문화원점거농성사건과 구로동맹파업 등으로 구속된 학생, 청년, 노동자들이 급증한 해였다. 그런 상황에서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구속노동자 가족협의회, 청년민주인사가족협의회, 장기수가족협의회 등을 통합하여 1985년 12월 12일 민가협을 조직하였다.<sup>31)</sup>

민가협은 각 부문 운동별 구속자 가족 모임의 상위조직으로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가협 내에서는 필요에 따라 다른 모임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이다. 유가협은 시위 과정에서 분신·투신하거나 경찰의 최루탄 파편이나 곤봉에 맞아 사망하고 의문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1986년 8월에 조직되었다. 이들은 민주화

---

김설이·이경은(2007), p.131.

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구술컬렉션, 빈민운동, 1970년대 빈민운동.

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자료콘텐츠, 민주화운동이야기, 12월. ‘길위에선 어머니들’(2016) 참조.

와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분신한 전태일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며 의문사 진상규명과 장례투쟁을 통해 독재정권의 폭력을 알리고자 하였다. 인권운동가인 박래군은 1988년 6월,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과 민주화를 외치며 분신한 동생 박래전의 장례 이후 유가협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이때부터 노동운동가에서 인권운동가로 변신하게 되었다(박래군, 2008: 68-69).<sup>32)</sup>

구가협, 민가협, 유가협 등의 피해자 가족운동은 종교계의 울타리에서 활동하며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1985년 민가협 출범 이후 NCKK 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등 종교단체 중심이었던 인권운동이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가협은 인권변호사 선임, 옥바라지 등 구속된 가족을 지지하는 활동을 비롯하여 구치소와 교도소 내 폭력, 장기수 문제, 조작간첩사건과 고문철폐 등 인권영역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며 유신철폐와 중앙정보부 해체, 학원자유를 요구하였다.

#### IV. 인권운동과 민중운동과의 관계

##### 1. 민중운동의 기본권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 등의 민중운동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추구하고 시작되었다. 민중운동은 그 전개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폭력적인 억압에 부딪히며 인권을 유린하고 억압하는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되었다.<sup>33)</sup>

이 시기의 민중운동도 종교단체의 영향 속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

32) 유가족협의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 <http://www.ugh.or.kr>. 1991년 강경대 치사사건 이후 ‘분신정국’에서도 유가협은 재야민주화운동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그 이후에도 학생운동,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많은 이들의 가족들이 참여하였다.

33) 민중의 역사적인 개념과 이론, 통사에 대해서는 강인철(2023) 참조.

먼저, 개발독재 시기에 빈민운동의 주요 활동은 철거민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전태일의 분신으로 도시빈민들의 삶과 생존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빈민운동이 촉발되었다. 기독교계 일각에서 “우리의 무관심이 전태일을 죽였다, 우리도 간접적인 살인자다”라는 반성이 시작되면서(이우정, 1995: 243), 1971년 9월에 도시빈민 선교를 위한 수도권특수지역 선교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도시빈민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책 입안자들에게 도덕적 각성을 설교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그들은 “도시빈민 지대의 힘없고 가난한 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대부분 철거이주민을 지원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었다.<sup>34)</sup> 예를 들어, 이문동 철거민들도 앞서 논의한 목요기도회를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자 하였으나 국가권력이 이들의 참석을 방해하자 “우리들의 억울한 호소”라며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하였다.

가난한 사람은 예배도 못 보고 기도회도 못갑니까? 왜 우리 가난한 우리들을 괴롭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호소를 드리오니 저희들을 빨갱이로 만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마음놓고 볼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6, 망우동 사랑방교회 교인 일동).<sup>35)</sup>

유신시대에 농민들의 권리찾기 운동은 가톨릭농민회의 활동에 의해 가능하였다.<sup>36)</sup>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사례인 ‘함평 고구마 사건’은

<sup>34)</sup> 1968년 9월 신구교 연합으로 도시문제연구소 내에 도시선교위원회를 설립한 후, 현장중심 활동 일변도에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하고자 1971년 9월 1일 초교파적 선교기구인 ‘수도권도시선교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 I』, pp.133-134.

<sup>35)</sup>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상세, ‘우리들의 억울한 호소’.

농협이 생산농민을 우롱하며 피해보상요구를 봉쇄하면서 시작되었다.<sup>37)</sup> 함평고구마 사건으로 농민들은 기도회를 열고 1978년 4월 24일 전주교회에서 전국 각지의 회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함평고구마 사건 피해보상과 농민회 탄압 중지, 구속회원 석방 등을 요구했다. 농민의 기도회는 단지 농민들을 위한 기도회로 끝나지 않았고 교회의 채신과 위정자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진행되었다.<sup>38)</sup> 이날 농협의 전남도지부장과의 면담이 기동대에 의해 저지되자 농민들은 성당 뜰에서 연좌농성과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권은 가톨릭농민회와 교회 단체들을 불온단체, 용공단체로 몰아가면서 농민회원을 위협하였다. 가톨릭농민회 단식자들은 이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 이념으로 농촌복음화의 사명을 띤 주교회의 공식 인준단체인 가톨릭농민회에 대한 탄압은 곧 교회에 대한 탄압”이라며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였다.

공업 입국의 기치 아래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면서 고도성장의 뒷전에서 서러움을 되씹어온 우리 농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명분하에서도 우리는

- 
- 36) 가톨릭농민회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JOC)의 농촌청년부로 시작, 1966년 한국가톨릭농촌청년회(JAC)로 발전하였으며, 1972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로 명칭을 바꾼 후 본격적으로 농민의 권익향상 활동을 하였다. 대중적인 농민운동 조직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은 농민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 “고구마 피해를 보상하라”.
- 37) 1976년 농협은 생산된 고구마를 모두 전량 수매하기로 하고 수매준비를 시켜서 농민들은 별도의 저장없이 노변에 고구마를 야적해놓았지만, 농협이 소량만을 수매하여 쌓여있던 고구마가 썩어들어가 함평군 내 가톨릭농민회가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활동을 시작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뉴스룸 “피땀흘려 지은 농사 농협 통해 제값 받자: 함평고구마사건과 한국가톨릭농민회”(2003.11.1.).
-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가톨릭농민회 문서, 오픈아카이브 “농민의 기도회 안내(함평고구마사건관련).”

특권과 재벌들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농민도 천부의 인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농민도 사람답게 살 권리와 자기 권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78.4.28. 한국가톨릭 농민회 단식자 일동).

이에 대해 당국은 피해액의 일부인 309만원을 보상하고 강제 연행된 이들을 석방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단식 중에 연행된 이들을 석방하지 않아 농성은 계속되었다. 결국 5월 1일 전국에서 모인 40명의 신부와 개신교 인사 등 500여 명이 다시 기도회를 열어 ‘전국 농민인권위원회’를 결성하였고 구속 중인 회원의 석방과 농민회 탄압 중지를 요구하였다. 이 일이 있던 바로 다음 날인 1978년 4월 30일, 강제 연행된 이들이 석방되어 단식농성은 끝났지만, 가톨릭 농민회는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 상황을 조사하였다. 당시에 함평농민회에서 활동한 김홍재도 농민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권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문을 보면, 천지지만 만물지중에 인간이 최고라고 그랬어. 천자(천자문) 띠고 <학어집>을 배우면 그 문구가 나와. 그런데 그때, 신문에 보면 황새가 죽으면 신문에 크게 나오고 사람이 죽으면 나오지도 않아. 그럼 그것이 뭐 짓거리냐, 박정희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저는 귀한 사람이 되고 저 밖에 사람은 저,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 ‘내 저놈을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지요(김홍재, 2020).

한국가톨릭 노동청년회(JOC)도 “노동조건 개선,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인간성 회복, 인권회복”운동을 내걸고 활동하였다.<sup>39)</sup> JOC는 1958년 11월에 공식적으로 발족된 이래, 한국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

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사료콘텐츠, “관찰하라, 판단하라, 실천하라-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에서 드러난 노동왜곡에 저항하며 민주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였다.

실제로 민중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1970년대 민주화운동의 의의로 중요하게 지적한 것이 민중운동의 등장과 민주화운동의 풍부화이다. 즉 학생운동, 종교계, 언론·지식인·재야 뿐 아니라 노동계 등 민중운동이 성장한 것이고 이것은 민주화운동의 투쟁성 강화와 민중 이념의 확대에 기여하여 민주화 운동을 풍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서 박정희 개발독재가 민중에게 강요하였던 ‘저임금-장시간 노동’속에서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저항하며 민주노조건설운동, 어용노조민주화운동, 임금상승을 비롯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확대해 갔다. 민중운동은 기층민중들의 생존권을 옹호하고 독재정권이 기반하고 있던 ‘수탈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운동으로서의 성격 또한 컸다.

비록 ‘인권’을 전면에 표방한 운동은 아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농민들, 노동자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현실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요구들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의 경우는 전태일 분신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이 연합하며 빠르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였다. 개발독재 국가와 후발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조건에서 한국은 산업화의 모순이 극도에 달하며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인권을 이념적 가치로 여기며 독재정권에 저항하였다.

## 2. 산업화의 모순과 노동운동의 촉발

‘조국근대화’라는 기치 아래 이뤄진 노동착취와 굶주림, 그리고 사회적인 차별을 분신(焚身)으로 알리고 노동운동이 촉발된 것은 ‘전태일 사건’에 의해서이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의 분신은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었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채 빈곤의 악순환

에 놓여있던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는 기회였다.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은 그곳에서 일하는 나이 어린 노동자들의 처지를 알리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루 16시간 노동에 임금은 생계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관계 당국에 진정을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와 사업주의 계속되는 무관심과 홀대 속에서 그는 결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며 분신하였다.

이 사건은 노동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노동자들에게는 스스로의 조건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 지식인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학생들도 농성과 실태조사, 추도회와 시위 등을 통해 노동문제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의 분신 이후 각종 선언문과 성명서에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사회운동 세력은 노동운동에 대한 연대를 표시했다(조영래, 2007: 24).

전태일의 분신 이후에 주목할 것은 1970년 11월 27일,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가 결성되면서 노동운동을 이끌었다는 점이다.<sup>40)</sup> 그들은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1977년 12월에는 평화시장노동자 인권문제협의회를 결성하고 노동인권헌장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노동교실을 열어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활동하였는데, 1977년 7월 전태일의 어머니 이소선의 구속과 노동교실이 폐쇄되는 사건을 거치면서 노동인권문제로 접근하였다. 노조원들은 이소선 석방, 노동교실 폐쇄 중지, 노조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저항하는 과정에 경찰과 강력하게 충돌하였다.<sup>41)</sup>

---

4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자료콘텐츠, 전태일 기념 자료집 참조.

41) 이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이소선의 석방과 이날의 저항에 대해 어떤 법적제도도 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약속을 받고 농성을 풀었으나 즉시 53명 전원이 연행되어 5명 구속, 9명 구류를 받았다. 위의 자료 참조.

이후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평화시장 노동자 인권문제협의회가 결성되고 그 해, 12월 23일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평화시장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600만 노동자는 단결하여 노동자의 아름다운 삶을 가로막는 억압정치 및 특권경제 폐지를 위한 투쟁에 궤기할 것”을 호소하며 다음과 같이 현실을 진단하였다.

오늘 우리는 77년을 마지막 보내는 마당에서 이 나라 노동자들의 사람다운 대접을 받기 위한 한 해 동안의 피눈물나는 투쟁을 되돌아 보며, 인간으로서의 보람있는 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중략) 한국의 노동자는 10년 전이나 다름없는 흑심한 빈곤과 질병과 천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계비에 훨씬 미달하는 저임금, 다락같이 올라가는 물가고 속에 노동자들이 피땀의 댓가는 고스란히 수탈되고 생계의 불안은 나날이 깊어가고 있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노동자는 빈곤과 질병과 천대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비에도 미달하는 저임금과 물가고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며 1977년 12월 23일, 평화시장 노동자인권문제협의회 이름으로 노동인권헌장을 발표하였다.<sup>42)</sup>

1. 노동자는 존엄한 인격을 지닌 인간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짓밟혀서는 아니된다. 그 누구도 가난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학대해서는 안되며 그 누구도 무식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멸시해서는 안된다. 작업장 안팎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인격모독, 인권유린은 일체 중지되어야 한다.
2. 노동은 신성하며 노동가는 모든 것을 창조한다. 노동자는 일할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신이 일한 몫은 공

4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자료콘텐츠, 한국노동인권헌장. 대표위원은 윤보선, 함석헌, 지학순, 천관우, 박형규이다.

정하게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노동자는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적절한 영양과 휴식과 건강을 유지하며 생계의 불안없이 최소한의 의료, 교육, 문화생활의 혜택을 누릴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질병에 걸린 노동자는 해고의 공포에 떠는 일없이 업주와 국가의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배울 나이의 노동자에게는 누구든지 교육을 받을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4. 따라서 현재의 노동조건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은 모두 일소되어야 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8시간 노동제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노동자들이 질병과 재해의 공포없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여성 근로자들은 생리적 조건으로 보아 최소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며, 동일 직종의 작업에 대해 남녀차별없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하락)

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억압 정치와 특권경제를 폐지하여야 하며 존엄한 인격체로서 노동자에게는 사람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도입, 8시간 노동제 확립, 남녀차별없는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1978년 노동절을 맞아 배포된 ‘노동인권선언’의 경우는 작성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당시의 노동현실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욱 여과없이 드러나 있다.<sup>43)</sup>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로자임을 자부해왔고 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산업전선에서 피땀을 흘려왔다. 100억불 수출목

---

43) 실제로 해외인권운동가인 빅터슈(Victor Hsu)는 “당시에 김관석 목사로부터 받은 문서에는 이름이 없었고 이름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혀갈 것입니다.”라며 당시의 엄혹한 현실을 말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빅터슈 구술자료 중.

표를 달성하면 노동자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다. (중략) 우리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기업 이윤을 외국 재벌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기아 임금에서 허덕이는 현실을 고발한다. 소위 고도의 경제성장이 월 3만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저임금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물가를 억제하던지, 아니면 노동자의 임금을 물가상승과 생산성 향상 이상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노동자의 실질임금 향상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자들이 조용히 일만 해줄 것을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상품생산의 기계도 아니다 (중략) 우리는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1주에 90시간의 노동을 강요받았고 1주에 7일씩의 노동을 강요당하기도 하므로 우리의 인권이 동물이하로 짓밟혀 왔다.”

1978년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200원 정도였음을 감안해 보면, 90시간 노동에 3만 원의 월급을 받은 노동현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며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과 이를 눈감아주는 정권, 어용노조에 대해 비판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국가보위법을 폐지하라.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1. 1일 12시간 1주 7일의 노동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주는 법과 사회 양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1. 노동청은 대오 각성하여 노동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라
1. 어용노조, 유령노조, 귀족노조 간부들은 노동자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자진 사퇴하라
1. 노동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무시하고 강제노동을 시키

고 있는 면방업체의 기업주는 이런 불법을 즉각 중지하고  
정당한 잔업수당을 지불하라.

1. 기업주와 노동조합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및 제명당한 노동자는 즉각 복직, 복직시켜라
1. 소위 국민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노동자에게 잔인한 구타행위를 자행한 것을 사과하고 그 주모자를 처벌하라.
1. 정당한 노동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모든 노동자와 이소선 여사를 즉각 석방하라(하락)

전태일의 분신은 1950-60년대를 거치며 형성된 도시빈민의 계속되는 궁핍과 착취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선언이었고 노동자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자생적 노동운동의 시작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최초로 연결하게 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이종오, 1985: 56).

## V. 앰네스티 활동과 선교사의 지원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탄압에 저항하는 국내 인권운동을 지지하고 연대한 해외운동은 정권에게 상당한 외교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 계기가 된 기점이 개신교의 남산부활절 사건이었고 민청학련 사건 후에 해외의 외교적 압력은 극대화되어 유신체제가 끝나는 1979년 10월 26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여덟 명이 억울하게 사형당하면서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두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법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1975년 4월 9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도 4월 10일 박정희 정권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앰네스티 한국위원회는 일명 ‘오적 필화사건’의 김지하 구명운동을 계기로 1972년 3월 28일에 창립되어 유신정권 초기부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양심수 구명운동을 펼친 유일한 단체이다. 윤현 목사와

한승헌 변호사가 주도한 앰네스티운동은 양심수 구명, 사형제 폐지, 고문철폐와 수감자 처우개선을 주장하였고 1980년 5월에는 한승헌 변호사 등 활동가들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지부가 폐쇄되기도 하였다.<sup>44)</sup>

1970년 한국에는 해외인권단체와의 연계가 없었지만, 당시에 국제펜클럽 한국본부의 서울대회가 열릴 때 한국민권투쟁위원회의 청년들이 ‘Save Poet 김지하’라고 영문 전단지를 만들어서 석방을 촉구하였다. 당시에 연세대 신학과 교수로 한국에 있던 라이드 에인슈타인 목사의 도움이 컸다. 그는 국제앰네스티 개인회원으로 언론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 한국에서 석방운동을 벌이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국제앰네스티의 그룹 지부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설립에 앞장섰던 윤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당시를 회고한다.

우리가 한사람, 한사람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와 연락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 지부 그룹이나 일부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거 참 좋은 얘기다 해 가지고 한국민권투쟁위원회가 지금의 종로1가의 3층에 있었는데, 거기서 같이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규약을 만들자, 그러자면 먼저 인제 준비위원이 발기인이 있어야 하나까 나하고 브라이드 에인슈타인하고, 그 때 세브란스 병원의 행정과장으로 와있던 베이리스 선교사 이렇게 서이 모여가지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에 규약방이라는 걸 만들었지(윤현, 2011).<sup>45)</sup>

44) 국제 앰네스티가 시작된 것은 이보다 앞선 1961년이다. 영국인 피터 베넨슨(Peter Nenenson)이라는 변호사가 포르투갈 대학생이 맥주를 마시면서 “자유를 위하여”라며 건배를 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주간지 <옵저버(Observer)>에 “잊혀진 수인들(The Forgotten Prisoners)”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의 지식인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1년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4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근

앰네스티의 지부가 되기 위해서는 본부에 회비도 내야하고 송금도 해야 했지만, 당시의 한국상황은 외환관리법에 따라 송금도 어렵고 회비도 부담스러웠으며 언어 문제도 있었다. 더구나 한국에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앰네스티 한국위원회’ 형태로 발족하게 되었다. 그 후 1972년 2월에 국제집행위원회로부터 한국위원회 설치를 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3월에 국제집행위원회 멤버의 한 사람인 국제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각계인사 25인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다.<sup>46)</sup> 그 후, 앰네스티는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우려와 한승원 변호사의 석방 요청, 김대중과 문익환 목사의 석방운동을 펴며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 시기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탄압은 역설적으로 초국가적 인권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황인구, 2023). 국제앰네스티 같은 조직적인 활동 이외에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던 선교사들의 개별활동은 국내의 인권상황을 알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본의 마에지마 무네토시(前島宗甫) 목사가 한국의 민주화에 직접 관여하게 된 것도 NCCK에서 일을 하면서부터이다. 당시에 일본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권문제는 재일한국인 문제였고 그것을 한국의 목사들과 만나서 풀어가고자 했다. 일본에서 한국민주화운동 지원활동을 한 오재식 목사는 일본에 도시농촌선교협의회(Urban Rural Mission)를 조직하고 1974년 1월에 한국문제기독자 긴급회의를 결정하여 지원활동을 하였다.

1972년은 저에게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게 된 해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계기가 된 것은 CCA(Christian Conference of Asia, 아시아기독교협의회)

---

거로 열람신청을 하여 찾은 구술내용임.

46) 여기에는 문동환 목사, 김재준 목사, 이병린 변호사, 한승원 변호사, 양윤식 전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여하였다. 위의 구술자료 참조.

였습니다. CCA와 아시아 천주교의 아시아 주교회의. 이것은 에큐메니컬(Ecumenical)의 일환으로 서로 의식하고 협력하면서 아시아에서 지역 활동을 하고 특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략) 1972년 12월에 한국에 입국했고 보증인은 박형규 목사였습니다(일본인 마에지마 목사, 2015).

한국과 해외를 오간 선교사들은 그들이 만든 월요모임(Monday Night Group)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해외에 알리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sup>47)</sup> 이들은 외국인이며 기독교인이자 선교사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전세계 교회조직과 언론 네트워크와 접촉할 수 있었다. 이 모임은 박정희 정권의 탄압에 항의하며 국내의 기독교 계열 사회운동가들을 후원하기 위한 비공식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영향력을 키워갔다. 1970년대 중후반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한국 관련 인권 정책과 외교 정책의 수립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월요모임의 국제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한국지원 네트워크와 한국인권을 위한 북미연합(North American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Korea)과 같은 일본과 미국 내의 연대 조직의 중요성도 커졌다. 그러나 월요모임 회원 중에서도 두 명이 한국으로부터 추방되었고 다른 회원들도 늘 추방의 위협에 시달렸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의 폭력과 그런 폭력을 용인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항의하였다. 민청학련 사건 이후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는 미국을 비판하였으며 그 날 시위 사진은 <타임(Time)>지의 아시

47) 월요모임은 1970년대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도왔던 미국과 캐나다, 호주, 독일 출신 선교사 모임을 일컫는다. 그들은 개신교, 가톨릭 선교사들로 유신체제하에서 한국인들에게 벌어지는 소식을 공유하기로 하고 월요일 밤에 매주 선교사 집을 돌아가며 만나기로 한 것이 모임의 시작이었다. 이하의 내용은 짐스텐출, 헨리엄, 린다존스, 진매튜스, 루이즈모리스 패트패터슨(2007) 참조

아판 표지에 실렸다.

1979년 카터 대통령의 방한 정상회담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는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이었다. 이 때, 카터 행정부가 참조한 ‘한국인권상황보고서(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는 월요모임에서 작성한 것이었다. 월요모임은 NCKK의 인권위원회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등 국내의 기독교 인권단체와 교류하면서 한국의 인권탄압 사례와 정치 상황을 해외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이 정보들은 일본의 아시아 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가 운영하고 있던 ‘아시아 행동그룹 자료센터(Documentation Center for Action Groups in Asia)’ 일본 교회협의회(NCC Japan) 산하 한국문제 기독교 긴급회의(Emergency Christian Conference on Korean Problems), 일본 가톨릭정의와평화협의회(Japanese Catholic Council for Justice and Peace) 등을 통해 미국과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해외 인권운동의 지원은 1980년 광주항쟁 때에 가장 활발하였다.<sup>48)</sup> 당시에 안기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어떻게 해외로 나가는지 파악하기 위해 해외인권활동가를 주목했지만, 문서 작성자는 ‘한국의 인권을 위한 태스크포스’가 전부였다. 한국의 목사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에 이름을 넣는다면 바로 잡혀가기 때문에 이름을 넣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작성된 문서들은 실제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 문서는 실제로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한국을 세계의 새로운 경제적 모델로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문서는 ‘좋아. 한국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취의 대가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

---

48) 빅터슈는 당시 제네바에 있었는데 미국 NCC 총무인 클레어랜들(Claire Randall)과 미국 NCC의 국제문제 담당 직원인 앨리스 와이머(Alice Wimer)에게 전화를 해서 낙하산부대원들이 광주를 침공할 예정이니 백악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그것을 막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해외민주화운동 구술기록 참조.

리를 억압한 대가로서, 특히 젊은 한국 여성의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빅터슈, 2016).

CCIA(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의 직원이었던 빅터슈(Victor Hsu)는 중요한 교회 인물들을 한국에 가도록 파송하는 일을 도왔고 CCIA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를 위해서 정책 선언문을 쓰거나 초안을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정치적 발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특별분야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시위하는 것을 반대하는 한국의 교회지도자들도 있었고 해외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한국에 오는 위험성을 설명해야 했다.

저는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일에는 일본,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및 남태평양의 섬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발전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갖는 생각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근로조건 때문에 여성들의 많은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류 노동자들이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적절한 공기조절 시설이 없는 형편없는 공장에서 장시간 일했으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에 항의하여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중략) 교회지도자들은 ‘자, 우리는 이런 여성들의 주장에 동조해야 합니다. 우리도 시위하러 갑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체포되었습니다(빅터슈, 2016).

1976년부터 WCC에서 일한 빅터슈 목사는 1970년대에 10년간 국제사회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한 다섯 가지 주요 문제는 음식, 환경, 여성, 해양법 및 신국제경제질서였다고 한다. 이 문제들은 직접 인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인권을 다루고 있는 문제였다

고 말한다.

이 문제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이며 무엇이 탄압이고 무엇이 인간존엄성과 인권의식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은 특별히 인권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 모두는 예를 들면 식량에 대한 권리와 같이 인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권입니다. (중략) 그 시절 여성들은 불평등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등을 원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권이었습니다(빅터슈, 2016).

1970년대에 한국은 유신체제 하에서 의문사와 불법구속, 조작간첩 사건 등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문제였다. 그러나 해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조직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더해 인권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 정의와 불의, 인간존엄성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였다.

## VI. 맺으며

독일의 역사가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2010)은 개념을 역사적 성찰의 대상으로 삼고 그 개념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현재 사용되는 개념과 사상을 역사적으로 재검토하고 개념의 역사를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우창, 2023: 372).

한국에서 1950-60년대에 정부가 독점하여 반공과 조국근대화, 경제성장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 인권개념은 1970-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거치며 억압에 대한 저항,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서구와 달리 급진적인 시민혁명을 통한 인권개념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정치·사회적 조건에서 종교계를 중심으로 하여 다

른 방식으로 개념이 획득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인권’이라는 용어를 외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인권’이라는 용어를 숨기기도 하였다. 일례로 ‘인권’을 사용하다가 삭제한 ‘민주청년인권협의회’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처음에 ‘민주청년인권협의회’라고 하여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이후에 단체명에서 인권을 삭제하였다.<sup>49)</sup> 그 이유는 “소극적인 인권운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민주화 투쟁의 의미를 담자”는 의미로 민주청년협의회로 바꾸었다.

이처럼 인권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독재정권의 억압에 저항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보다 추상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는 인권이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또한 인권에는 자유와 평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당대에 평등을 주장할 경우, 공산주의 세력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자유’를 전면에 내세우던 시기도 있었다. 인권은 시기와 국면마다 운동 주체의 목적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해석되었다. 이처럼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한 사회운동이 ‘인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인권의 외피를 벗어버린 이유를 통해서도 당대 인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폭력의 잔인함 앞에서 무력한 ‘인간’ 존재의 절실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혹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인권’으로 주장하였다면, 민주화운동의 성격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은 단지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정치적인 제도나 형식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지,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고민한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9) 민주청년인권협의회는 1978년 5월 12일에 민청학련사건 석방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로 인해 구속·제적되었던 청년들이 발족한 단체이다. 이후 그들은 구속자 가족협의회와 긴밀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창립선언문 참조.

이 시기의 인권운동은 종교단체와 법조인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인권의 내용은 고문치사, 구속자 석방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를 문제삼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를 비판하였다. 또한 노동운동, 빈민운동, 농민운동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에서 더 나아가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초기 노동운동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인권유린으로 진단하며 수탈적 자본주의와 특권경제, 억압정치를 비판하였다. 이 시기에는 선교사와 해외인권운동의 지원으로 한국의 인권현실을 해외에 알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 인권운동은 권위주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체계를 구성하는 민주화 과정에서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며 인간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한 활동의 출발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신체제 이후에는 국가폭력으로 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시민·정치적 자유에 한정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뿐 아니라 구성원들이 누리고 획득해야 할 생존권과 노동권 등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권리’의 목소리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확대의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당대에 이들의 활동은 비록 ‘인권운동’으로 전면화,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1970년대에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국가폭력과 억압 앞에서 정치의 도구로 전락한 무력한 개개인의 권리를 폭로하고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방향을 찾아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고문공동대책위원회를 거쳐 구속자 가족들의 저항으로 발전하며 향후 인권운동의 기초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0-80년대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인권’은 고문, 억울한 누명과 살해의 위협 등 국가 폭력을 폭로하고 무력한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 알리는 ‘저항의 언어’면서 동시에,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척박한 노동조건을 드러내고 인간다운 삶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생존의 절실함을 표현하는 ‘생존의 언어’이기도 했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1970년대 중반에 인권운동이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성명서와 구술내용을 검토하였기에 1980년대의 인권운동은 소략하게 다루고 지나간 부분이 있다. 또한 해외와 기독교와의 연결고리도 냉전 반공주의 체제와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라는 국제정치적 맥락까지 검토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논문접수일: 2024. 11. 15, 논문심사일: 2024. 12. 07, 게재확정일: 2024. 12. 12)

## 참고문헌

- 강인철. 2003. 『전쟁과 종교』. 한신대학교 출판부.
- \_\_\_\_\_. 2023. 『민중, 저항하는 주체: 민중의 개념사, 이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_\_\_\_\_. 2023. 『민중, 시대와 역사속에서: 민중의 개념사, 통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고지수. 2020. “1980년 5월 광주와 김대중 구명운동, 그리고 자유공조: 북미주 개신교 네트워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53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김명배. 2015. “한국사회와 기독교(7):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본질과 현상』.
- \_\_\_\_\_. 2017. “한국교회 참여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 1970년부터 2000까지”, 『기독교사회윤리』.
- \_\_\_\_\_. 2020. “연구동향으로 본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인식 - 해방 후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통일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vol. 46.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 김상근. 2006. “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는 인권·민주화 운동에 나섰나?.” 『내일을 여는 역사』 26.
- 김설이·이경은. 2007. 『젯빛 시대 보랏빛 고운 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래균. 2008. “이명박 정부의 인권운동 방향”. 『문화과학』.
- 손승호. 2015. “유신체제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의의 인권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43.
- \_\_\_\_\_. 2017.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_\_. 2020. “5·18민주화운동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53.
- 손호철, 2003,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집 4호, 1-29.
- 안병욱. 2010.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한국민주화운동의 성격과 논리』서울: 선인.
- 윤선자. 2005. “‘5.18’광주항쟁과 1980~199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

주의와 인권』 5.2.

- 윤정란, 2015,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
- 이우창, 2023, “지성사 연구의 방법들: 담론 연구, 개념사, 언어맥락주의” 『역사와현실』, 제128호, 한국역사연구회.
- 이영제, 2021.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기념 계승의 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6호.
- 이미숙, 2019. “1980년 ‘일한연대’ 활동의 성격과 의미: 일본 시민사회의 광주 5·18과 ‘김대중 구명운동’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9-4.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 이유나, 2017. “해방 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 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46.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 이정은, 2008. “제도로서의 인권과 인권의 내면화: 1960년대 인권담론의 정치학”. 『사회와 역사』. 한국사회사학회.
- \_\_\_\_\_. 2010. “한국전쟁 이후 ‘인권보호대상자’를 둘러싼 담론 형성의 매카니즘”, 『사회와 역사』 86. 한국사회사학회.
- 정계향, 2021. “해방 후 제일대한국기독교회(KCCJ)의 사회운동: 1970~1980년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40호. 역사학연구소.
- 정근식, 2022. “민주화와 인권 사이에서: 이행기 정의와 구술사”. 한국구술사학회 학술대회.
- 정병준, 2022. “박정희 정권과 기독교: 교회-국가 관계에 대한 연구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56. 한국기독교역사학회.
- 정정훈, 2023. 『인권의 전선들 한국 2세대 인권운동의 형성과 전개』. 당대.
- 최용주, 2020. “광주항쟁과 초국적 후원 네트워크”.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운석, 2021. “유신치하와 5.18 광주 민중항쟁 전후의 한·독 개신교 에큐메니컬 협력과 김대중 구명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54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_\_. 2024. “1970 ~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토대로서의 한·독 에큐메니컬 협력관계”.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 황인구, 2023. “국제앰네스티 인권운동과 1970년대 한국의 초국가적 민주화”, 『역사비평』, 143. 역사문제연구소.

- 짐스텐홀, 헨리엄, 린다존스, 진매튜스, 루이즈모리스 패트패터슨. 2007. 『시대를 지킨 양심 한국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나선 월요모임 선교사들의 이야기』. 시대를 지킨 양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연구소 편, 2006. 『민주화운동사 연표』, 도서출판 선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1』.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 『한국민주화운동사 2』.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기본연구: 민주화운동의 개념 정의와 범주연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편,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편,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 2』.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편, 1994, 『한국교회 인권선교 20년사』.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https://archives.kdemo.or.kr>).

<Abstract>

**The role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in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 Historical 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in the 1970s and 1980s**

Lee, Jeong-Eun\*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by whic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cquired meaning and what content it consisted of during the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 from the 1970s to the 1980s.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existing discussions, document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statements from movement organizations, and oral history data collected from the Korea Democracy Foundation. The subjects of the human rights movement during this period were religious groups, lawyers, and victims' families, and the people's movement organization also demanded guarantees of basic rights and a humane life. This article sought to trac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y examining the process by which the concept of human rights, monopolized by the government in the 1950s and 1960s, gained social meaning thr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Keywords: democratization movement, human rights movement,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mnesty Korea branch, Monday meeting

---

\*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